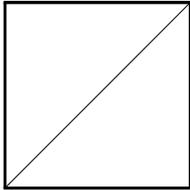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7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5. 18. (제 10 차)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5. 18.

## 1. 의결주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펀드,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3. 검사결과 지적사항

가. ☒☒☒☒☒펀드,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 과태료 52.3억원 부과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과태료 4억원 부과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1.2.5.) 심의필

<별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6억 3천만원 부과

- 조치사유 : □□□□□펀드 및 ⊗⊗⊗⊗신탁 사모신탁 불완전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법적근거 : (舊)「자본시장법」(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390조, [별표22]

### 2. 조치사유

#### 가. □□□□□펀드,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중소기업은행은 xxx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xxx명에 대해 20xx.x.xx. ~ 20xx.x.xx. 기간 중 □□□□□펀드 xxx건(xxx.x억원), 20xx.x.xx. ~ 20xx.x.xx. 기간 중 □□□□□펀드 xx건(xxx.x억원), 20xx.x.xx.~20xx.x.xx. 기간 중 ⊗⊗⊗⊗신탁 xxx건(xxx.x억원) 등 총 xxx건(x,xxx.x억원)을 판매하면서

-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설명 내용 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1) 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명(개인 xx명, 법인 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x억원), □□□□□□□펀드 x건(x억원) 및 ⊗⊗⊗⊗신탁 x건(x.x억원) 등 총 xx건(xxx.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제108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WM센터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명(개인 xx명, 법인 x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x억원), □□□□□□□펀드 x건(xx.x억원) 및 ⊗⊗⊗⊗신탁 x건(xx.x억원) 등 총 xx건(xxx.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명(개인 xx명, 법인 x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x억원), □□□□□□□펀드 x건(xx.x억원) 및 ⊗⊗⊗⊗신탁 x건(x억원) 등 총 xx건(xxx.x억원)에 대한 투자권유 하는 과정에서

투자권유 직원들 xx여명이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권유 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광고문에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 20xx.x.xx. 기간 중 투자자 x명에게 ㉸㉸㉸㉸펀드 및 ㉸㉸㉸㉸ ㉸㉸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건을 발송하면서 사모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동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투자대상자산의 부실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시지에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포함하였으며,

- \* 1) ㉸㉸㉸ CEO의 운용사(GP) 지분담보로 상품의 안전성 강화(하락분 보충)
- 2) 안전장치1 : 부동산 선순위 담보(LTV xx% 이하)
- 3) 안전장치2 : 해외 후순위채권(Note) xx%
- 4) 美 소재 SPV의 선순위채권 매입으로 상품의 안전성 강화 등

위와 같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건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준법감시인 심사필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 계 법 규

### 1. 자본시장법 관련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 47. 제47조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4. <생략>
-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6. <생략>
-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8. <생략>
-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삭제>
- 25의2. <삭제>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47. <삭제>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5. (생략)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0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버.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3의6. <생략>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생략>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삭제>		
머. <삭제>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함

-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7. <생략>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같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30~32. <생략>

## 2. 은행법 관련

### □ 「은행법」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

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

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자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제449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준용규정 포함)

- (1) 위반건수 : 확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계약 건수
-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한 계약 건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1) 중 대 :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경 미 : 판매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적용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산업금융과	특수은행검사국
연락처	02-2100-2663 02-2100-2864	02-3145-7196